

예산총칙

2023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3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643,418,062	19,302,542
일반회계	598,020,672	17,940,620
특별회계	45,397,390	1,361,922
기타특별회계	45,397,390	1,361,922
상수도사업	3,025,462	90,764
하수도사업	3,320,701	99,621
수질개선	10,551,169	316,535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402,200	12,066
의료급여기금	726,142	21,784
소득특화사업	6,000,000	180,000
농공단지조성사업	2,007,597	60,228
공영개발사업	998,040	29,941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80,124	2,404
행복주택사업	5,248,250	157,448
청사건립사업	13,037,705	391,131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24,285,773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30,3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2. 재해대책 및 복구비